

오-피스(O-PEACE)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시스템

키오스크(Kiosk)

-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
- 정보서비스와 업무의 무인 자동화를 통해 쉽게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
- 공공시설, 공항, 백화점,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 없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지체장애인에게 키오스크는 작동법을 잘 알아도 화면까지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고, 음성 지원이 되지 않거나 점자가 없는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가 있는 승객이 키오스크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 승객과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키오스크,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키오스크는 정말 모두에게 편리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누리고 있었던 시설물이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사회 곳곳에 장애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감수성의 중요성

장애감수성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

건물에 진입할 때, 계단, 방지턱, 엘리베이터의 버튼 높이가 내가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감수성의 중요성



국제표준화기구 ISO 공식 마크

두 가지 형태의 장애인 마크가 있습니다. 왼쪽 마크는 누군가가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줘야만 할 것 같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수동적인 느낌 느낌이 드는 반면 오른쪽 마크는 직접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은 뉴욕시에서 사용되는 마크로 사라헨드렌과 브라이언글레니는 ISO 마크가 장애인을 마치 수동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능동적인 의미를 담은 형상을 만들어 기존의 마크 위에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시설물 훼손이란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새로운 마크를 보며 알아채기 시작했고,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은 일상 및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못하거나 사회생활을 못하고, 대화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약이 따를 뿐입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출현율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장애 범주가 달라서입니다. 미국은 신체 외부장애, 신체 내부장애,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체 외부장애 중에는 외형적 추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형적 추형으로 인해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알코올 중독도 장애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호주는 신체내부장애에 당뇨를 포함시켰고, 정신적 장애에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사회적 장애라는 범주가 있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를 장애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장애 범주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사회적 장애는 장애를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진 장애의 유무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이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출현율

우리나라는 장애를 신체외부장애, 신체내부장애,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개인적 요인으로 보느냐, 환경적 요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장애는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 장애를 바라보면, 기능적인 손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의료적인 기준으로 진단에 의해 개인이 가진 신체, 정신적 기능이 손상되어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장애를 바라보면,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을 발견하게 되고, 이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은 건물에 출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계단이 아니라 경사면으로 만들어졌다면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출입할 수 있겠죠? 환경이 개선되면 개인이 가진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

■ 외부 신체기능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지체장애

-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
- 신체 일부의 손실 및 마비, 변형, 절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의 46.7%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지체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과 보조기기 지원이 갖춰지면 다양한 활동 가능
- 경한 수준의 기능 장애뿐 아니라 절단과 같은 영구적 기능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보조기구를 통해 신체활동 가능

장애유형별 특성

■ 외부 신체기능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 질병, 외상에 의한 뇌의 손상이 발생하여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 장애와 언어, 시각, 청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음
- 운동장애, 언어장애로 인해 장애가 외형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장애 유형임
- 말이 어눌하거나 얼굴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지적 장애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결코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이 아님
- 신체적 장애, 언어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장애유형별 특성

■ 외부 신체기능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 잔존 시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명 중 2명은 전맹, 8명은 저시력임
- 저시력 시각장애는 물체의 명함이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음
- 점자 보도블럭이 노란색인 이유는 명시성과 확산성이 높아 저시력인 경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청각장애

-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님
- 청력의 손상 정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보청기나 수어, 구어,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가능

장애유형별 특성

■ 외부 신체기능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언어장애

-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의 장애
-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말을 더듬는 소리, 실어증 등과 같이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음성 기능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 언어장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의 속도가 느릴 뿐이지 대화의 이해력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동료와 대화를 한다면 천천히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는 배려가 필요함

안면장애

- 안면부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애로 조직의 비후, 함몰, 결손 및 면상반흔, 백반증
- 안면을 포함한 목, 목덜미, 뒤통수 등 안면 주변에 노출되는 부분도 안면장애에 해당됨

장애유형별 특성

■ 내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 신체기능 장애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신장장애

-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심장장애

- 심장기능의 저하로 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음

간장애

- 간 기능의 손상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 피로할 경우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 주의

장애유형별 특성

■ 내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 신체기능 장애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호흡기장애

- 폐나 기관지 등 호흡 기관의 기능 부진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
- 건조한 환경이나 급격한 온도변화에 민감해지므로 공기 변화와 호흡에 신경써야 함

장루요루장애

- 인공항문이나 배뇨관에 의존해 대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상태
- 배변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하는 공간에 대한 배려 필요
-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

장애유형별 특성

■ 내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 신체기능 장애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뇌전증장애

-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작이나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
-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중 일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능에 이상을 일으킴
-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의식상실, 호흡곤란,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남
- 갑작스런 발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넥타이나 단추,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시켜줘야 함

장애유형별 특성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뉩니다.

발달장애

- 지능 지수와 사회성숙 지수가 70이 이하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음
- 지적 장애는 주로 18세 이전에 나타나며, 자기관리나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음
- 자폐성 장애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함

정신장애

-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가 해당함
- 정신분열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는 조울증을 의미하며, 1년 이상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경우 정신장애로 인정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이해

■ 형평성과 공평성의 딜레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

-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
-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
- 공평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 의료적 혜택을 받는 것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이해

■ 형평성과 공평성의 딜레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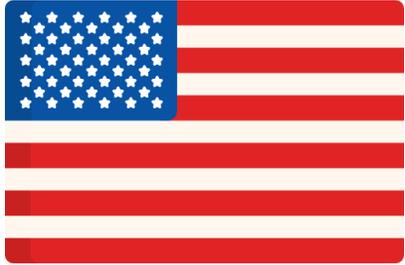
인권

-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
-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
- 공평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 의료적 혜택을 받는 것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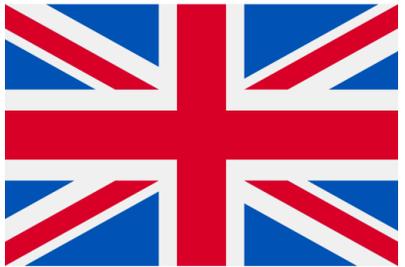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8년 4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이 보장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이해

■ 형평성과 공평성의 딜레마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장애인이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불이익, 사회적 고립이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의료기술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



-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하여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둠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이해

■ 장애인의 차별의 유형

1 직접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의 형태
-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 장애를 이유로 계약 거부, 출입 거부, 승차거부, 입사지원 제한 등의 경우
- 저상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사례
- 항공사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사례

2 간접차별

- 직접차별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불리해지는 경우
- 지적 장애인에게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요금제나 약정 등을 쉽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 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는 경우
- 청각 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듣기평가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가하는 경우
-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
-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의 직접적인 차별은 없었지만 결국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하거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경우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이해

■ 장애인의 차별의 유형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제반을 마련하는 것을 거부한 형태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취하는 것

4 광고에 의한 차별

- 방송이나 광고에서 장애인을 불우한 이웃, 불쌍한 존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이해

■ 장애인의 차별의 유형

5 장애인의 관련자에 대한 차별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에게 앞서 알아본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을 행한다면 장애인을 차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음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나 보조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행하는 것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 고용에서의 차별

채용 공고에는 자격 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되어 있었지만 중증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충족되었는데, 면접을 볼 기회를 박탈시킨 것입니다. 인권위는 채용 담당 직원의 규정 준수 및 교육을 명령하였고,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메모를 하며 문제를 푸는 회계학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메모 대필 편의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 대필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시험감독관에게 메모 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휴가 사용을 근무태만으로 간주한 차별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 시간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체 장애가 있는 교원이 재활치료를 위해 총 6일 7시간 50분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성과평가 항목에 지각, 조퇴, 병가, 연가 5일 초과로 0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병가 사용에 불이익을 주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의 강화를 명령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취업과 직장생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편의시설 이용자의 정의

편의시설

-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두를 위한 시설을 의미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라고 정의함
- “장애인 등”이라는 의미는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함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장애물이란 뜻의 Barrier와 자유란 뜻의 Free의 합성어
- 장애물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일시적 부상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
-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관람 열람석, 핸드레일, 경사면의 접근로 등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것
- 특정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함에 있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디자인으로 이 역시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한 설계
- 높이가 다른 손잡이, 가운데 구멍이 있는 콘센트, 시침/분침에 볼을 만들어 만든 시계 등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이해

■ 장애인 고용의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며 통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과 정부, 기타 단체의 사회적 책임 강조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이해

■ 장애인 고용의무제

장애인 고용의무

3.4%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3.1%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민간 사업장

2.92%

민간, 공공기관의
전체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고용부담금 부과
: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부과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이해

■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1 사업주 지원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초과한 사업체에게 고용장려금 지급
-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장려금 지급
- 유해한 근무환경, 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 구입하거나 수리 등의 용도라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로 1%의 저금리로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 편의시설의 설치 및 구입,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등 사업주당 3억 원 이내로 장비 무상 지원
- 중증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14만원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원활한 높은 기능의 활동 수행을 도움
- 전동 휠체어, 기립형 휠체어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휠체어
- 자동차 보조기기와 같은 물리적 지원이 가능한 기기부터 소리 증폭기
- 큰 글씨로 확대해주는 독서 확대경
- 문자나 기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음성 출력기 등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이해

■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2 장애인 근로자 지원제도

- 장애인 직무 중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 근로 지원인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거나 수기, 서류 대독, 수어 통역 등 장애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
- 적합한 직무를 발견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훈련 및 장애인의 능력 개발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업주 간의 약정체결을 통해 우선 채용
-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2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필요
- 취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전문훈련을 이수한 전문가로서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줌